

중국의 통신시장 및 규제현황

연구 원 여 혁 종*
 연구 원 박 민 정**

현재 가입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인 중국은 포화기에 접어든 국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국내 통신업체들에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 체결 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여 한-중 통신분야 교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장진입장벽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통신시장과 규제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한-중 FTA 및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중국의 통신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2. 유선통신 시장 3. 무선통신 시장 4. 인터넷 서비스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중국의 통신 규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2. 시장진입규제 3. 기타 주요 규제정책 IV. 결 론 |
|--|---|

I. 서 론

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칠레, EFTA, 싱가포르 등과 FTA를 타결하였으며, EU, 아세안,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안에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일본과는 2004년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락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 570-4181, hyukjong@kisdi.re.kr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 570-4345, mjpark@kisdi.re.kr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5월 27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한-중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¹⁾ 6월 중순경에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협상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9월, 한국과 중국은 ASEAN+3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추진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고, 민간공동연구를 2년간 수행한 후 2006년 11월에 연구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 개최 기간 동안 이뤄진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6월 중순경에 5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관학 연구가 마무리 되면 그 기초 위에서 국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한-중 FTA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입자 수 기준 세계최대의 통신시장인 중국의 통신시장 현황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중 FTA 및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통신시장 현황

1.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중국의 통신시장은 성장속도나 잠재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간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체 경제성장률 이상의 발전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다. 유무선 통신 가입자 수는 1993년 말 총 1천 8백만 명에서 2006년 말 현재 8억 2천 9백만 명에 이르러, 가입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이 되었다.

2006년 중국 통신시장은 11.4%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유무선 가입자 수는 전년도 대비 8천 5백만 명 증가하였다. 무선통신 시장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도 200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통신시장은 6개의 주요 사업자(China Telecom, China Netcom, China Mobile,

1) 중앙일보(2008. 5. 28), "한·중 FTA 체결 적극 검토".

China Unicom, China Tietong, China Satcom)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 우전부(현 신식산업부) 사업부문이 운영하던 통신사업을 1994년 China Telecom의 설립을 통해 이관하였고, China Telecom의 경쟁자로 China Unicom을 설립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쟁도입의 성과는 미미하여 1999년에 China Telecom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China Telecom을 China Telecom(유선), China Mobile(무선), Guoxin(무선호출), China Telecommunications Broadcast Satellite(위성) 등 4개의 회사로 분할하였다. 또한 2002년 3월 정부는 China Telecom을 재분할, 양쯔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China Netcom과 합병시키고, 남쪽은 China Telecom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 1〉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구분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복합성장율, '02~'05(%)
인구(백만명)	1,292	1,300	1,316	1,327	1.0
1인당 GDP(위안)	9,030	9,811	13,318	15,781	18.2
유선통신					
가입자(백만명)	263.3	312.0	350.4	368.0	12.0
보급률(%)	21.2	24.3	27.0	28.0	12.0
무선통신					
가입자(백만명)	268.7	334.8	393.4	461.0	20.0
보급률(%)	20.9	25.0	30.3	35.0	19.0
인터넷					
사용자(백만명)	79.5	95.0	111.0	137.0	20.0
보급률(%)	6.2	7.3	8.4	10.0	19.0

자료: 신식산업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6개 통신업체를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사로 재편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²⁾ 중국의 제1 이동통신사업자인 China Mobile은 가장 약체의 유선사업자인 China Tietong을 인수한다. 중국의 제1 유선통신사업자인 China Telecom은 China Unicom의 CDMA사업과 China Satcom을 흡수하는 한편 China Unicom은 CDMA사업을 떼어내는 대신에 제2 유선통신사업자인 China Netcom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예전부터 예상됐

2) 전자신문(2008. 5. 26), “中 통신업계 3사로 재편”.

던 시나리오으로써 기존의 6개 유무선통신사업자를 유무선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3개의 종합통신사업자로 재편함으로써, 중국 통신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China Mobile³⁾을 견제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2. 유선통신 시장

2002년 5월, China Telecom이 2개의 사업자로 분할되면서, 유선통신시장은 크게 조정되었다. 양쯔 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China Netcom과 합병, 남쪽은 China Telecom이 운영하게 되었다. China Unicom, China TieTong(전 Railcom), Unisiti(AT&T와 Shanghai Telecom의 합작투자회사) 등 다수의 유선통신 사업자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현재 유선통신 가입자가 무선통신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China Telecom과 China Netcom은 지구내 이동(Limited Mobility) 유선서비스⁴⁾를 제공한다. PAS 회선은 2002년 말 중국 전체 유선회선의 4%에서 2004년 말 기준 22%를 차지하여 크게 성장했다.

〈표 2〉 사업자별 유선통신 회선수

(단위: 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China Telecom	133.1	161.0	186.6	210.1
China Netcom	58	70	80	115.3
기 타	22.8	32.1	48.3	24.6
합 계	214.2	262.7	315.3	350.0
보급율	16.7%	20.3%	24.3%	26.8%

자료: IDATE(2006)

- 3) 현재 이동통신의 유선통신에 대한 대체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우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07)에 따르면 2006년 4대 통신사업자의 실적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China Mobile을 제외한 기타 3대 사업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실현하였다. China Mobile의 매출액 증가율은 해당 업계의 전반적 증가율을 초과했으며, 그 외 순이익 지표를 기준으로 China Mobile의 이익 성장률은 23.3%로 크게 증가했으나, 나머지 3개 사업자의 순이익은 모두 하락하였다.
- 4) 지구내 이동 서비스(Limited Mobility Service)란 유선통신서비스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PAS(Personal Access System)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서비스와 더불어 저렴한 가격에 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선통신사업자는 기존 유선통신 사용자의 무선통신으로의 전환을 일부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3. 무선통신 시장

2001년 중반,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가입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시장이 되었다. 1995년 말 4백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07년 9월 기준 5억 5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 이동통신 보급률이 유선통신의 보급률을 추월하였으며, 2004년 무선통신 서비스의 매출액 증가는 전체 통신서비스 매출액 증가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무선통신시장은 China Mobile과 China Unicom에 의해 양분된 상태다. 2004년까지 무선통신의 주요 사업자인 China Mobile과 China Unicom은 비슷한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양사의 성장률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표 3〉 무선통신 가입자 현황 추이

(단위: 만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9. 30
China Mobile GSM 가입자	20,429	24,665	30,120	34,966
China Unicom 가입자	11,208	12,779	14,237	15,603
China Unicom GSM 가입자	8,427	9,507	10,587	11,592
China Unicom CDMA 가입자	2,781	3,272	3,649	4,011
합 계	31,637	37,445	44,357	50,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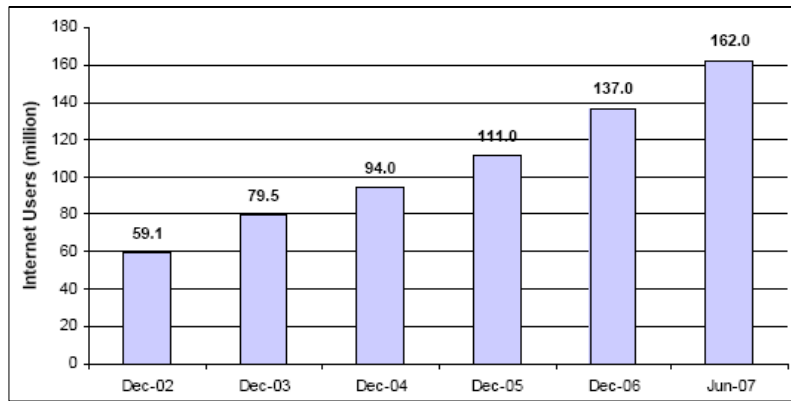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Telecoms Intelligence(2007) 재정리

4. 인터넷 서비스 시장

2007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억 6천 2백만 명에 달하며, 그 중 1억 2천 2백만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한다. China Telecom이 2007년 중반 기준, 가입자 약 3천 2백만 명으로 중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2위인 China Netcom은 가입자 수가 1천 7백만 명이다.

중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보급률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00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2년 말 가입자 수 약 3백만 명에서 2006년 중반 가입자 수 4천 7백만 명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곧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급률은 여전히 4% 미만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림 1) 중국 인터넷 시장의 성장 추이



자료: International Telecoms Intelligence(2007)

Ⅲ. 중국의 통신 규제현황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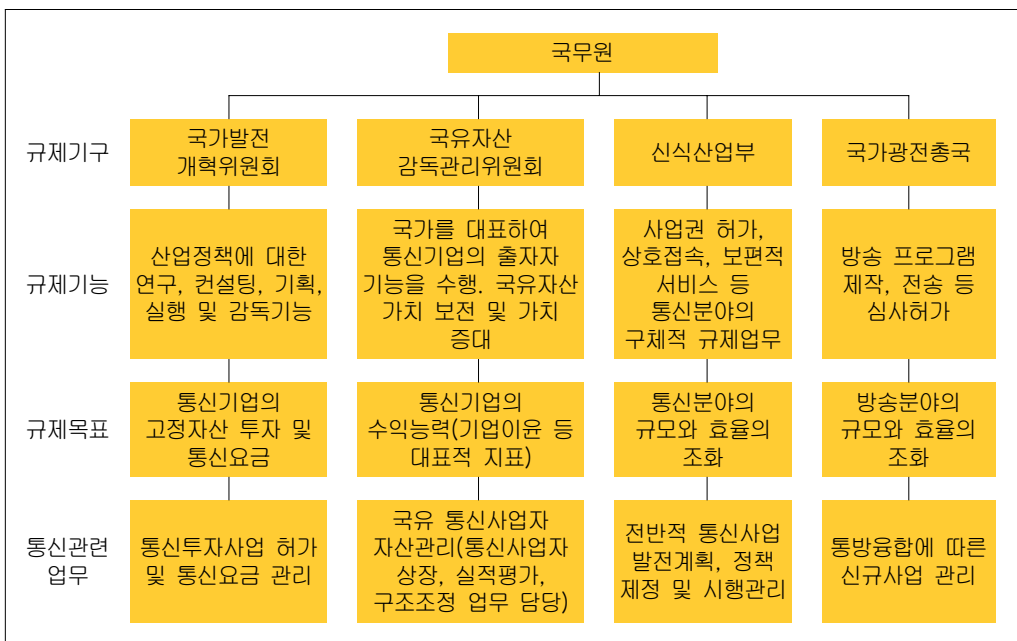
가. 통신규제기관

지난 2003년부터 약 5년간 신식산업부(信息産業部,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MII))는 정보산업 주관부처로서 중국의 통신정책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그 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광전총국 등 다수기관이 참여해 왔다. 신식산업부는 전반적 통신사업 발전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법규와 규칙의 제정, 외국 통신사업자와의 교섭 등을 담당하는 통신규제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부처이다. 주요 정책결정과 규정의 제정에 관해서는 국무원에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정책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신투자사업 허가 및 통신요금 관리 등에 관여하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통신사업자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국가광전총국은 통방융합에 따른 신규사업을 관리해 왔다.

중국의 통신정책과 운영을 담당하여 온 신식산업부에 대한 기능의 재조정, 기구 통폐합 등의 문제는 수년전부터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2008년 3월 11일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양회)에서 의결에 따라 신식산업부는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로 개편되기로 결정되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인 '대부제(大部制)' 개혁의 특징에서 나온 결과물로, 기존 신식산업부의 정보통신 정책기능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기능,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부처로서 정보통신 및 산업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공업정보화부의 출범시기는 기존에 5월 중순으로 예정되었으나, 아직 출범되지 않았으며, 현재 설치 방안을 제정중이다. 공업정보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화와 정보화에 대한 관리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산업화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중국 통신분야 규제체계



자료: 건홍리서치(2007)를 재정리

중국은 또한 중앙부서와 지방정부의 '이중 지도'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산업도 중앙정부인 신식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통신관리기관으로 구성된 이중 관리 구조에 따라 관리되어, 지방통신관리기관은 신식산업부의 지도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통신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앙 통신관리기관과 지방통신관리기관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상하급 통신 관리기관의 기능 및 권력 배치는 집중 및 등급별 관리 원칙을 따른다.

중국의 통신규제는 현재 정책결정기능과 규제기능 모두를 정보산업 주관부처에서 갖고 있어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 또는 그 외 행정기구가 주요 사업자의 지분을

상당 정도로 소유하고 있다.⁵⁾

나. 통신사업관련 법규현황

1)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국무원령 제291호, 2000년 9월 25일 시행)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2000년 9월 국무원령 제291호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를 공포, 시행하였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는 7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벌칙 및 부칙 외에 4개장만이 통신시장, 통신서비스, 통신건설, 통신안전 등 방면을 규정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4대 기본원칙은 첫째, 정부 및 기업의 분리 및 공평, 공정의 원칙, 둘째, 경쟁보호 및 발전촉진의 원칙,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반영, 넷째, 국제화 및 미래 지향이다.

〈표 4〉 전신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조례 제정 목적, 적용범위, 주관부서, 통신감독관리의 기본 원칙
제2장 통신시장	- 통신서비스 허가, 상호접속, 요금, 통신자원 관련
제1절 통신서비스허가	- 기본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 - 각 역부별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 신청 방법
제2절 통신망간 상호접속	- 상호접속 당사자, 원칙, 접속계약 체결, 실시 방법 • 주도적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 의무 보유
제3절 통신요금	- 시장조절가격, 정부지도 가격, 정부규정 가격으로 분류 • 기본통신서비스는 정부규정가격, 정부지도가격, 또는 시장조절 가격 시행 • 부가통신서비스는 시장조절가격, 정부지도가격 시행 - 비용표준의 제정 방법
제4절 통신자원	- 통신자원의 사용과 비용 납부, 통신자원의 분배 • 유상사용 • 통신자원은 통일계획, 집중관리,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지정배분방식, 경매방식 가능)
제3장 통신서비스	- 통신서비스 제공, 개통, 서비스 장애, 통신이용자 비용, 이용자 서비스 등의 불만처리, 국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 보편적서비스 제공 등

5) 중국 4대 통신사업자(상장부분)의 지분 중 정부 및 그 외 행정기구가 차지하는 비중(2007년 6월 30일 기준, 건홍리서치): China Telecom(82.9%), China Netcom(74.3%), China Mobile(74.4%), China Unicom(71.4%). 그러나, 개인 투자자에게 개방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민간지분보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성	주요 내용
제4장 통신건설	- 통신시설 구축 및 통신장비 입망 허가 관련
제1절 통신시설구축	- 통신시설 건설
제2절 통신장비 입망허가	- 통신단말장비, 전파통신장비와 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입망허가증제도 시행 - 통신시설에 대한 접속허가 신청
제5장 통신안전	- 전신을 통한 정보 등 규율
제6장 벌칙	- 행정처분과 기타 형사처분
제7장 부칙	

자료: 전신조례(2000)

2) 중화인민공화국전신법 제정 현황

현재 중국의 통신 산업 개발규제정책은 '전신조례'만 있는 상황이다.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기술융합이 발전하고 통신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법규가 완비되지 않고 규제정책이 체계화 되지 않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통신시장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국제자본의 경쟁이 심화되며 통신소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행정법규로서 전신조례의 규제효력이 불충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성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년간 전신법 입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2001년 WTO 가입 후 통신법 제정작업을 가속화하여 보편적서비스, 허가제도, 네트워크 규칙, 통신망 접속관리, 번호자원 관리, 요금정책 등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전신법' 초안이 완성되어 각 부처, 관계자에게 회람되었다. 동 초안은 16장 294조로 구성되어 내용이 방대하며 WTO 규칙과 통신업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전신법' 초안은 총칙, 통신시장참가허가, 통신망 간 상호접속, 통신 자원, 통신 가격, 보편적 서비스, 사용자 권리 보호, 통신 건설과 보장, 통신 기준과 설비망의 도입, 망과 보안, 감독 검사, 법률 책임, 부칙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전신법'은 현재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협조하여 심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⁶⁾ 입법 과정은 2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중국 정부가 아직 명확한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과

6) 전신법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신식산업부(정책법규부 담당)에서 '전신법' 초안 작성
2. 통신업계(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사회 각계 및 전국 법률계의 의견 광범위하게 수렴
3. '전신법(심사초안)' 수정의견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반영
4.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3차에 걸친 심의 통과
5. 최종적으로 전인대 표결에서 통과 후 발표

현 단계의 중국 통신시장 환경 및 입법상황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출범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전신법의 입법 진행 현황

시기	진행 사항
1980년	중국 전신법 초안작성
1988년	국무원의 연도 입법계획에 편입
1993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계획에 편입
1998년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쳐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일류 입법계획에 편입 ⁷⁾
2000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발표
2001년	입법추진 가속화, 여러 차례의 전문가자문위원회 토론
2002년 9월	“중국전신법(초안)” 작성 개시
2003년 10월	“중국전신법(초안)”이 작성되고 통신개혁의 기본구상도 확정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시작,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일류 입법계획에 편입
2004년 11월 15일	“전신법”은 전국 법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신법(심의용)” 수정의견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반영
2005년 3월 1일	전인대 공개사이트에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2005년 입법계획”에서 “전신법”은 “조건이 성숙되면 심의하는 법률초안”의 일류 항목에 편입
2005년 1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2006년 입법계획”에서 “전신법”은 1차 심의 법률안 리스트에 오름
2006년 8월 24일	“전신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일류 입법계획”에 편입됨
2007년 3월 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2007년 입법계획”이 발표되고 “전신법”을 예비입법항목으로 계획에 편입함

자료: 건홍리서치엔컨설팅(2007)

2. 시장진입규제

가. 서비스 분류

중국의 통신서비스는 ‘전신조례’에 따라 크게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기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부 분류되어진다. 세부 서비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

7) 전인대 “일류 입법계획항목”에는 모두 가장 시급한 중점 입법항목들만 편입된다.

<표 6> 전신조례상의 중국의 통신서비스 분류⁸⁾

	기본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네트워크 시설(PSTN)을 보유하고 공공 데이터전송 및 기본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네트워크 기본시설을 임차하여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무
서비스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기본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통신서비스 - 셀룰러 이동통신서비스 - 제1종 위성통신서비스 - 제1종 데이터통신서비스 • 제2종 기본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S 통신서비스 - 무선폭출 서비스 - 제2종 위성통신서비스 - 제2종 데이터통신서비스 -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 국내 통신시설 서비스 - 네트워크 관리대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부가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서비스 - 국내 다자통신 서비스 -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망 서비스 - 인터넷데이터센터 서비스 • 제2종 부가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re&Foward 유형의 서비스 - 콜센터 서비스 - 인터넷 접속서비스 - 정보서비스
허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신식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규제기관 • 업무 커버리지 범위가 2개 지역이상일 경우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신식산업부)의 승인 필요

나. 허가제도

중국 ‘전신조례’ 및 ‘행정허가법’의 시행에 따라 ‘신식산업부에서 실시하는 행정허가항목 및 요건, 절차와 기한에 관한 규정’(신식산업부령 31호, 2005년 1월 10일 시행)에 의하면, 중국은 기본통신서비스, 그리고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을 제외한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신조례’는 통신역무별로 신청자격조건, 절차, 제출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통신서비스의 시장진입에 관해 허가제(approval)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신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하에 ‘통신서비스 분류목록’ 및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신식산업부령 제19호, 2001. 12. 26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주요 허가요건으로 중국지분비율 51% 이상 등을 두고 있다(<표 7> 참조).

8) “통신서비스 분류목록”의 조정에 관한 통고(2003년 4월 1일 시행)

〈표 7〉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허가대상	기본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심사허가
법률근거	전신조례
실시주체	신식산업부
수리기관	신식산업부 전신관리국
허가요건	<p>(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본통신서비스에 전문 종사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중 국지분비율은 51% 이상</p> <p>(2) 등록자본금: 1개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내 경영은 최저 2억위안, 전국 또는 다 지역 경영은 최저 20억위안</p> <p>(3) 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망구성 기술방안 보유</p> <p>(4)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인력 보유</p> <p>(5)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장소 및 대응 자원 보유</p> <p>(6) 가입자를 위해 장기간 서비스 가능한 신용 및 능력 보유</p> <p>(7)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행위 없음</p> <p>※ 심사시, 국가 안전, 통신망 안전, 통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보호와 통신시 장의 경쟁상황 등 요소 감안</p>
절차 및 기한	<p>○ 신청절차(제출자료):</p> <p>(1) 회사의 법인대표가 서명한 기본통신서비스 경영 서면 신청서</p> <p>(2) 사업자등록증 부분 및 복사본</p> <p>(3) 회사 개요 소개서</p> <p>(4)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기업법인 연도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자금 검증보 고서 및 신산부에서 규정한 기타 회계관련 서류</p> <p>(5) 회사정관, 지분구조 및 주주의 관련사항</p> <p>(6) 서비스 발전의 타당성 연구보고서</p> <p>(7) 망구성기술방안</p> <p>(8) 가입자를 위해 장기간 서비스 제공 및 품질보장 조치</p> <p>(9)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보장 조치</p> <p>(10) 회사의 신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p> <p>(11) 회사의 법인대표가 서명한 법에 따른 통신서비스 경영 서약서</p> <p>○ 접수, 심사, 결정절차</p> <p>-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 접수하고 수리통지서 발급</p> <p>-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180일(6개월)내 심사를 완료, 허가/불허 결정 내림</p> <p>- 허가대상에 “기본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발급</p> <p>○ 변경 또는 연기절차</p> <p>- 합병 또는 분할, 주주변경, 경영권 이전 등 경영주체 변경 또는 서비스커버범위 변화시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실시 가능</p> <p>- 회사명, 등록주소, 법인대표 변경시 변경절차 실시</p> <p>- 유효기간 만료시 연기 절차 실시</p>
비고	“기본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통신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각 5년과 10년이 됨

자료: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07)

<표 8>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허가대상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심사허가
법률근거	전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주체	신식산업부, 각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수리기관	신식산업부 전신관리국, 각 지역 통신관리국
허가요건	<p>(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p> <p>(2) 등록자본금: 1개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내 경영은 최저 100만위안, 전국 또는 다지역 경영은 최저 1,000만위안</p> <p>(3) 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관련기술방안 보유</p> <p>(4)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인력 보유</p> <p>(5) 필요한 장소 및 시설 보유</p> <p>(6) 가입자를 위해 장기간 서비스 가능한 신용 및 능력 보유</p> <p>(7)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행위 없음</p> <p>※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ICP) 종사시, 요구되는 특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발전계획 및 관련기술방안 - 건전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보장조치 보유 - 서비스항목이 뉴스,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속할 경우 관련 주관부처의 심사동의서 취득
절차 및 기한	<p>○ 신청절차(제출자료):</p> <p>(1) 회사의 법인대표가 서명한 기본통신서비스 경영 서면 신청서</p> <p>(2) 사업자등록증 부분 및 복사본</p> <p>(3) 회사 개요 소개서</p> <p>(4)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기업법인 연도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자금 검증보고서 및 신산부에서 규정한 기타 회계관련 서류</p> <p>(5) 회사정관, 지분구조 및 주주의 관련 상황</p> <p>(6) 서비스 발전의 타당성 연구보고서와 기술방안</p> <p>(7) 가입자를 위해 장기간 서비스 제공 및 품질보장 조치</p> <p>(8) 정보보안보장 조치</p> <p>(9) 회사의 신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p> <p>(10) 회사의 법인대표가 서명한 법에 따른 통신서비스 경영 서약서</p> <p>(11) 필요시 주관부처의 동의서류</p> <p>○ 접수, 심사, 결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 접수하고 수리통지서 발급 -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60일(2개월)내 심사를 완료, 허가/불허 결정 내림 - 허가대상에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발급 <p>○ 변경 또는 연기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또는 분할, 주주변경, 경영권 이전 등 경영주체 변경 또는 서비스커버범위 변화시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후 실시 가능 - 회사명, 등록주소, 법인대표 변경시 변경 등록절차 실시 - 유효기간 만료시 연기 절차 실시

비고	(1)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모두 5년 (2) 비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은 “비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신고 관리방법” (신식산업부 제33호)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함
----	--

자료: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07)

부가통신업무의 경우, 진입시 우선 정부 주관부서의 허가(approval)를 받아야 하나, 그 이듬해부터는 신고(declaration)만 하면 된다. 또한, 부가통신업무의 경우 ① 다지역 부가통신업무와, ② 1개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부가통신업무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식산업부에서 담당, 1개 지역(성 자치구 및 직할시)내의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통신관리국에서 담당한다(〈표 8〉 참조).

다. 외국인 투자 관련

중국이 WTO 가입 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 시장개방 양허안을 살펴보면, 중국은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유선전화, 이동전화, 부가통신,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개방을 약속하였다. 단계별 개방 약속에 따라 2008년 현재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의 경우, 지역 제한없이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측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하였으며, 부가통신과 무선호출의 경우, 지역 제한없이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측 지분은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표 9〉 외국인 투자 문호 개방 일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선전화	-	-	-	25% ⁽¹⁾	25% ⁽¹⁾	35% ⁽²⁾	49% ⁽³⁾
이동전화	25% ⁽¹⁾	35% ⁽²⁾	35% ⁽²⁾	49% ⁽²⁾	49% ⁽²⁾	49% ⁽³⁾	49% ⁽³⁾
부가통신	30% ⁽¹⁾	49% ⁽²⁾	50% ⁽³⁾	50% ⁽³⁾	50% ⁽³⁾	50% ⁽³⁾	50% ⁽³⁾
무선호출	30% ⁽¹⁾	49% ⁽²⁾	50% ⁽³⁾	50% ⁽³⁾	50% ⁽³⁾	50% ⁽³⁾	50% ⁽³⁾

* 수평적 양허: 합작투자 지분의 외국인 투자 비율 25% 이상 요건

주: (1) 서비스 가능 지역: 상해, 광주, 북경 (3개 지역)

(2) 서비스 가능 지역: 성도, 중경, 대련, 복주, 항주, 남경, 영파, 청도, 심양, 심천, 하문, 서안, 태원, 무한 (17개 지역 추가)

(3) 서비스 가능 지역: 제한 없음

중국은 또한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의해 외국인이 중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하고 하는 경우, 기본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제한을 49%,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제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허가요건 및 절차는 내국인 투자와 유사하다.

<표 10> 외국인투자 통신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허가대상	외국인투자 통신사업자 설립 심사허가
법률근거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실시주체	신식산업부
수리기관	신식산업부 종합규획사
허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통신사업: 전국적 또는 다지역은 최저 20억위안, 1개 지역은 최저 2억위안 - 부가통신사업: 전국적 또는 다지역은 최저 1,000만위안, 1개 지역은 100만위안 ○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통신사업(무선호출 제외)은 최대 49% 이내 - 부가통신사업(기본통신서비스의 무선호출 포함)은 최대 50% 이내 ○ 외국투자자의 주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통신사업: ① 등록국가 또는 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보유, ② 기본통신사업의 양호한 실적 및 운영경험 보유 - 부가통신사업: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의 양호한 실적 및 운영경험 보유
절차 및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절차(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통신사업: ① 사업제안서, ② 타당성 연구보고서, ③ 중국측 투자자, 외국측 투자자의 자격증명서류 또는 확인서류, ④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 또는 확인서류 - 부가통신사업: ① 타당성 연구보고서, ② 외국측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확인서류, ③ 전신조례에서 규정한기타 요건 또는 확인서류 ○ 수리, 심사 및 결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투자 통신서비스경영 심사의견서” 취득: 신식산업부는 신청서류에 대해 기본통신의 경우 180일(6개월), 부가통신은 90일(3개월) 내에 심사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허가할 경우 해당 의견서 발부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기본통신 또는 다지역 부가통신의 경우 상무부에서, 1개 지역 부가통신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외경제무역담당부서에서 설립할 기업의 계약서, 정관서류에 대해 90일내 심사 완료하고 해당 비준증서를 발급함 -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 취득: 상기 비준증서를 획득한 후 신식산업부에서 발급 받음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회사등록
비고	외국인투자 통신사업자의 국제통신서비스 경영은 반드시 신식산업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신식산업부에서 허가하여 설치된 국제통신관문국을 통해 추진해야 함

자료: 건홍리서치엔컨설팅(2007)

라. 인수·합병

외국기업은 중국 통신시장에 주로 중국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2가지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

다. 중국의 우수기업들이 외국인 인수·합병의 표적이 되자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규정’(2002년),⁹⁾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중국내 증권투자에 대한 잠정 규정(2002년),¹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잠정규정(2003년),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2003년),¹¹⁾ 외국투자자의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 규정(2006년),¹²⁾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추가규정¹³⁾ 등이 있다.

3. 기타 주요 규제정책

가. 공정경쟁

통신 분야에서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란 사업자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과 무관한 이유로 반경쟁적 교차보조,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기술 및 상업적 정보의 미공개 등을 행함으로써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기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경쟁에 대한 중국 내 구체적인 제도는 미비하나, 중국 정부는 ‘전신조례’, ‘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신식산업부령 제9호, 2001년 5월 10일 시행)’, ‘법에 따른 통신시장 정돈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신식산업부령 제453호, 2003년 10월 29일)’ 등을 통하여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집행부로서 신식산업부는 전국의 통신 분야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지방 통신관리기구는 해당 지역내에서의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감독관리는 행정과 기업의 분리, 독점타파, 경쟁격려, 공개, 공평공정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전신조례 제4조).

중국정부는 ‘전신조례’를 통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타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제한, 반경쟁적 교차보조, 타 사업자 배척을 위한 원가보다 낮은 통신요금 제공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제41조, 제42조),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식산업부 및 지방통신관리기구는 각기 해당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벌금, 영업정지 등의 다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제72조, 제75조). 또한, ‘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에서는 주도적

9) 상장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외자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상장기업의 비유통주인 국유주와 법인주에 한해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

10) 중국 A주시장이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에게 개방되었다.

11) 외자의 인수·합병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외국계 자본의 중국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13) 외국인 기업의 중국내 지주회사를 통한 상장회사 주식매입이 가능케 되었다.

통신사업자와 비주도적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할 경우, 양측은 상대측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상호접속과 무관한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제9조 3항) 취득정보를 반경쟁적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표 11〉 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및 관련 처분

	금지행위	위반시 처분 규정
통신서비스 이용자에서 서비스 제공 관련	(1) 이용자에게 지정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지정 단말장비를 구입하도록 한정: 이용자가 입망증을 기취득한 자체 마련 통신단말장비사용을 거절하는 행위 (3) 임의로 요금표준 변경: 요금징수항목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거절, 지연 또는 중지하는 행위 (5) 이용자에 대한 공개적 약속 불이행: 허위 선전하는 행위 (6)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자의 활동 방해: 민원 제기한 이용자에게 불이익 제공하는 행위 * 관련법규: 전신조례 제41조	- 담당 기관: 지방통신관리기구 - 처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을 내려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 • 시정, 사죄 및 손해배상 거부할 시, 경고 및 1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 관련 법규: 전신조례 제75조
통신서비스 경영활동 관련	(1)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선택 제한하는 행위 (2) 다른 경영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교차보조금 지불하는 행위 (3) 경쟁상대를 배척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경쟁을 하는 행위 * 관련법규: 전신조례 제42조	- 담당 기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 및 지방통신관리기구 - 처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기관은 직권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 관련 법규: 전신조례 제72조

자료: 전신조례

나. 상호접속

중국의 상호접속에 관한 규제는 ‘전신조례’(제17조~제22조)에서 원칙적인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산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및 ‘통신망간 접속분쟁 처리방법(신식산업부령 제15호, 2002년 1월 1일 시행)’ ‘통신망간 상호접속 비용정산법(2001년 3월 시행)’ 등에 명시되어 있다.

‘전신조례’상 상호접속은 통신망간 경제적 합리성, 공평공정, 상호협조의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주도적 통신사업자¹⁴⁾는 다른 통신사업자 및 전용망 사업자의 상호접속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제17조). 좀 더 구체적인 상호접속 관련 규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차별적인 상호접속 조건

주도적 통신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품질면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전신조례 제21조 제2항, 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12조제2항), 상호접속 요금면에 있어서도 망간 정산표준은 원가에 기반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22조 제2항)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할 것으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주도적 통신사업자는 타사업자의 상호접속 전송회선이 자신의 통신 시설을 경유해야 할 경우, 사용을 허락해야 하며, 그 어떤 불합리한 조건도 추가하지 못한다(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10조).

2) 원가지향적 요금

망간정산표준은 원가에 기반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원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망간정산표준은 요금에 기반하여 잠정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22조 제2항).

3) 상호접속 협상 절차 공개,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보장

주도적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호접속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7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 발표하는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상호접속절차를 허가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 분쟁해결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먼저 이해 쌍방간 상업적 협상을 진행하되, 규정된 기간 내(상호접속 요구 제출 후 6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일방은 통신감독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조정기관인 통신감독기구는 45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일, 이를 통하여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개검증을 통하여 상호접속방안을 도

14) 주도적 통신사업자란 필수 기초통신망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시장에서 비교적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기타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시장진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인 신식산업부가 주도적 통신사업자를 확정하게 된다(전신조례 제17조).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접속을 강제하도록 규정된다. 이러한 조정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신감독기구에 행정재심을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재심 및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조정기관의 결정사항은 집행된다(전신조례 제20조, 공중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리규정 제39-45조, 통신망간 상호접속 분쟁처리방법).

다.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

중국은 '전신조례'에서 무선주파수, 위성궤도위치, 통신망 번호 등 희소자원의 사용은 계획, 집중관리, 합리적 분배원칙에 따른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신자원의 사용대가에 대한 방침은 정보산업 주관부문에서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되며, 통신자원은 규정, 계획, 용도 및 서비스 능력을 고려하여 분배되며, 지정분배 방식 또는 경매방식을 통한 분배가 가능하다(제27조~제30조). 원론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신조례' 외에도 '전파관리조례(국무원령 제128호, 1993년 9월 11일 시행)', '무선주파수 할당규정(신식산업부령 제40호, 2006년 9월 5일 시행)', '통신망번호자원관리방법(신식산업부령 제28호, 2003년 3월 1일 시행)' 등에서 번호 및 주파수 등 통신자원의 할당 및 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 번호자원

번호자원의 할당 및 이용은 사용 지역 범위에 따라 다지역 관련 번호자원 관리 업무는 신식산업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1개지역(성, 자치구, 직할시)내 번호자원은 해당 성(省)급 통신관리국에서 관리한다. 2003년에 시행된 '통신망 번호자원 관리방법'에서 번호자원은 국가 소유로서 유상사용제도와 심사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자원의 관리는 공개, 공평공정 및 통일계획, 집중 관리, 합리적 배분, 효과적 이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 12> 번호자원의 신청 및 할당 방법

사용 지역 범위	신청 및 할당 방법
다지역	- 담당기관: 신식산업부 - 절차: 1. 번호자원 신청인: 신청서류 접수 2. 신식산업부: 신청서류 접수여부 통지(접수 후 근무일 10일 내) 3. 신식산업부: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완료, 허가여부 결정(통지 발송 후 근무일 50일 내) → 허가시: 신청인에게 공식 허가문서 발송 해당 성급 통신관리국 및 기본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허가문서 송부 → 불허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 통지

초 점

사용 지역 범위	신청 및 할당 방법
1개 지역	- 담당기관: 지방통신관리국 - 절차: 1. 번호자원 신청인: 신청서류 접수 2. 통신관리국: 신청서류 접수여부 통지(접수 후 근무일 10일 이내) 3. 통신관리국: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완료, 허가여부 결정(통지 발송 후 근무일 30일내) → 허가시: 신청인에게 공식 허가문서 발송 신식산업부에게 허가문서 송부하여 등록 → 불허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 통지

자료: 통신망번호자원관리방법(신식산업부령 제28호) 제11조~제18조

(제6조), 번호신청인이 번호자원의 사용을 허가받은 후 통신주관부서는 할당지정, 무작위 선정, 경매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제18조). 번호사용에 대한 심사허가는 번호자원계획, 번호 이용용도 및 신청인의 예상 서비스 능력을 근거로 한다.

2) 주파수

무선주파수 자원은 ‘전파관리조례’를 통하여 국가 소유로서 통일적 계획, 합리적 개발, 과학적 관리 및 유상 사용 원칙이 시행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제4조). 국가 전파관리기관인 신식산업부 전파관리국이 전국 무선주파수, 무선국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방전파관리기구가 신식산업부 전파관리국의 지도 및 관리를 받으며 해당 지역의 무선주파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식산업부는 무선주파수에 대하여 통일적인 계획과 분배를 실시하고, 이를 신식산업부와 지방전파관리기관이 무선국 설치 심사허가 권한에 근거하여 무선주파수를 배분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본 관할시스템에 분배한 주파수 대역과 주파수 배분을 이행하며, 신식산업부와 지방전파관리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등록한다(제22조).

또한 2006년 개정된 무선주파수 할당규정에서는 국제사회의 국제적 주파수 할당과의 일치성 유지 및 ITU 전파규칙 준수 요구를 반영하여 2003년 세계전파통신회의(Inter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ITU Region 3)의 결과에 따라 중국의 주파수 할당 규정을 국제적 주파수 할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제2.4.2조).

IV. 결 론

현재 가입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인 중국은 포화기에 접어든 국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국내 통신업체들에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여 한-중 통신분야 교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중 FTA 등 통신분야의 본격적인 교역 확대를 대비하여 중국의 통신서비스 규제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시장진입장벽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현재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을 규율하는 '전신조례'는 전신법 제정 이전의 과도기적 법규임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¹⁵⁾ 행정 에 의한 재량적 규제에서 법에 의거한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제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전신법의 도입 시기는 불확실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법률체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통신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적용이 가능한 법규정은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뿐으로, 많은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불확실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둘째,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참조문서를 채택함에 따라 통신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신식산업부의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하는 등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¹⁶⁾ 그러나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의 형식적인 분리는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인 신식산업부는 통신사업자의 운영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 또한 신식산업부가 직접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통신사업의 소유주로서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더 나아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지가 불확실하며,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중국은 WTO 가입시 자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적으로 양허하였지만, 과도한 등록자본금 요건¹⁷⁾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들이 여전히 존

15) 이석우·공영일(2004) 참조

16) WTO 참조문서, 5. Independent regulators, "The regulatory body is separate from, and not accountable to, any supplier of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 decisions of and the procedures used by regulators shall be impartial with respect to all market participants."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도 분리되어야 하며, 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절차는 모든 시장진입자들에 대해 공정하여야 한다."

17) 기본통신사업의 경우, 전국적 또는 다지역은 최저 20억위안, 1개 지역은 최저 2억위안, 부가통신

재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6년이 경과하였지만 부가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20여 개의 외국 업체가 신청하여 실제 5개 업체만이 허가를 획득하였고, 기본통신사업의 경우 신청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이는 과도한 등록자본금 요건과 오랜 심사기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허가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자본금 요건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지만, 자체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임대회선을 통한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는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중국의 WTO 양허상 외국인 사업자가 중국에 합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통신사업자만을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어 유무선, 위성분야의 각 시장이 복잡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마지막으로 중국은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인이 진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신식사업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이용기록을 무조건 제공해야 함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는 외국계 인터넷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 사업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¹⁹⁾ 중국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가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통신시장은 현재의 상황이나 중국 전신법 초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 및 자국 통신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6개의 통신사업자를 3개의 사업자로 재편하기로 발표하

사업의 경우, 전국적 또는 다지역은 최저 1,000만위안, 1개 지역은 100만위안이다. <표 10> 외국인투자 통신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참조.

18) 미국, EU 등은 중국의 WTO 양허와 달리 외국기업이 합자기업의 중국측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각각의 무역장벽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USTR, "200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China"; European Commission, "Fiche on Non-Tariff Barriers"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october/tradoc_130827.pdf).

19) Paul Budde(2007), pp.9~10

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명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및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 정책과 규제, 법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인수·공영일(2003), “중국 3G 사업동향 및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03-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강하연 외(2007), 『FTA 협상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07), 『IT통상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 중국통신서비스시장 규제제도 분석 및 협상의제 발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 공영일(1999),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책동향”, 《정보통신정책》 제11권 13호 통권23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 _____(2000), “중국 이동전화시장의 현황 및 발전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2권 17호 통권26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_____(2002), “중국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현황 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17호 통권30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7] _____(2002), “한국과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비교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4권5호 통권29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8] _____(2002), “중국 통신망간 상호접속 정산방법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3호 통권29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9] 공영일·이석우(2003), “중국 이동전화시장의 현황 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5권2호 통권31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박민정(2007), “중국 3G 이동통신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9권 3호 통권41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 이석우·공영일(2004), “중국 전신법 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1호 통권34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2] European Commission(2006). “Fiche on Non-Tariff Barriers”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october/tradoc_130827.pdf).

- [13] IDATE(2006). "The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2007.
- [14] International Telecoms Intelligence(2007). "China-Telecoms Market Report". 2007. 10.
- [15] Paul Budde(2007). "China-Regulatory Environment". 2007. 10.
- [16] USTR(200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China". 2008. 3.
- [17] USTR(2008). "Results of the 2008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2008.
- [18] WTO(2007). "Trade Policy Review Body-Trade Policy Review-People's Republic of China-Minutes of Meeting-Addendum". 2007. 1.
- [19] ____ (2008). "Trade Policy Review Body-Trade Policy Review-Report by China". 2008. 5.
- [20] ____ (2008). "Trade Policy Review Body-Trade Policy Review-Report by the Secretariat-China". 2008. 4.
- [21] 매일경제(2008. 3. 12), "中, 공업정보·인력자원부 등 신설".
- [22] 아이티타임스(2008. 3. 13), "中 신식산업부, '공업정보부'로 개편".
- [23] 전자신문(2008. 5. 26), "中 통신업계 3사로 재편".
- [24] 중앙일보(2008. 5. 28), "한·중 FTA 체결 적극 검토".
- [25] KIICA 북경센터(2007. 9. 19), "중국 <전신법> 심사초안 개요".
- [2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國務院令 第128号, 《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 [27] _____, 國務院令 第291号,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
- [28] _____, 国发 [2007] 33号 《國務院關於第四批取消和調整行政審批項目的決定》
- [29] 信息產業部, 信息產業部令第9号, 《公用電信網間互聯管理規定》
- [30] _____, 信息產業部令第19号, 《電信業務經營許可證管理辦法》
- [31] _____, 信息產業部令第15号, 《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
- [32] _____, 信息產業部令第28号, 《電信網碼號資源管理辦法》
- [33] _____, 信息產業部令第40号, 《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頻率劃分規定》
- [34] _____, 信息產業部令第453号 《關於加強依法治理電信市場的若干規定》
- [35] 중국 신식산업부 홈페이지 <http://www.mii.gov.cn/>